

효고현 교육위원회 전

2020 년 월 일

동의서

다음 자는 효고현 교육위원회 사무국 체육 보건과가 학교 보건 안전법 제 24 조에 근거하는 사무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서에 한해, 재학 기간중에 지방세 관계 정보 또는 생활보호 관계 정보에 대해 취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서의 복사는 무효이며, 본서 제출 시의 사무처리에 한해 동의한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동의서	학생과의 관계		
	후리가나		
	이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input type="checkbox"/> 학생과 동거	
동의서	학생과의 관계		
	후리가나		
	이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input type="checkbox"/> 학생과 동거		
동의서	학생과의 관계			
	후리가나			
	이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input type="checkbox"/> 학생과 동거		
동의서	학생과의 관계			
	후리가나			
	이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input type="checkbox"/> 학생과 동거		

동의서	학생과의 관계			
	후리가나			
	이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input type="checkbox"/> 학생과 동거
--	----	--	---------------------------------

동의서	아동 등과의 관계			
	후리가나			
	이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input type="checkbox"/> 학생과 동거	

기재 요령

- 1 동의하는 자가 스스로 서명할 것.
- 2 대리인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것.
- 3 신청서 등에 동의가 필요한 자의 주소를 기입한 경우, 동의서에 기입은 생략해도 좋다.
- 4 동의가 필요한 자의 수가 서명란보다 많은 경우에는 난외에 기재해도 좋습니다.

2020 년 5 월

보호자님

의료비 원조에 대해서

현교육위원회사무국

체육보건과

효고현에서는, 학교 보건 안전법 시행령 제 8 조에 정해진 질병에 대해, 의료비 원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 년도에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십시오.

1. 원조의 대상이 되는 질병

(학교 정기 또는 임시건강진단 및 건강상담 실시로 발견된 아래 질병에 한한다.)

트라코마 및 결막염(알레르기성은 제외), /흰자, /겨드랑이 및 농진, /중이염

/만성 부비강염 및 아데노이드 /충치 /기생충병(충란 보유를 포함)

2.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분

2019 년도 또는 2020 도에 (1) 또는 (2) 중 하나의 조치를 받았거나 또는 2020 년도에 (3)~(5)에 해당하는 분.

(1)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2) 생활보호가 정지 또는 폐지되었다.

(3)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을 받고 있다. (※특별아동부양수당·아동수당과는 다름).

(4) 2019년 중(2019년 1월부터 12월)의 세대의 총소득이 아래 표의 인정기준액 이하인 분.

(5) (1)~(4)에 해당하지 않으나 생계유지자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

세대 수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5인 세대	6인 세대
소득액 합계	1,783,000円	2,228,000円	2,567,000円	2,865,000円	3,303,000円
세대 수	7인 세대	8인 세대	9인 세대	10인 이상(1인 늘어날 때마다)	
소득액 합계	3,879,000円	4,270,000円	4,657,000円	426,000엔 증가	

3. 지원신청 절차(매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배포한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개인번호(마이넘버)등 부착용 대지 및 동의서

또는 증명서(첨부증명서에 대하여 뒷면을 참고하세요)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십시오.

(제출마감:5월 29일)

(양식)

의료비 지원 신청서

2020년 월 일

교육위원회 님

신청자	주소	
	후리가나	
	보호자 이름	印
	TEL	— —

의료비 지원을 신청 하고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또 의료 원조비의 청구와 수령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합니다.

		가 족 명	후 리 가 나	관계상	生年月日	근무지 재적 학교명/학년/반
해당 학생에게 표시를 한다				세대주	· ·	
					· ·	
					· ·	
					· ·	
					· ·	
					· ·	
					· ·	

※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 전원을 기입할 것.

신청 이유	(1)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5) (1)~(4)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사정 (내용을 기입)
	(2) 생활보호가 정지 또는 폐지되었다.	
	(3) 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특별아동부양수당·아동수당과는 다르다.)	
	(4) 세대의 총소득이 인정 기준액 이하이다. (전체의 소득을 합산한다.)	
입학·전입 년 월 일		2020년 월 일

교 장 확 인	2020년 월 일	인 정	2020년 월 일
	효고현립 아시아국제중등교육학교장		효고현 교육 위원회 ㉔

의료비 지원 신청서에 첨부할 증명서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래 증명서 또는 세대 전원의 개인번호(마이넘버) 등 부착용 대지 및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해당사항	필요한 증명서	증명서 발급처 ※개인번호 제출의 경우는 생략 가능
1	생활보호를 받고 있음	·생활보호증명 또는 · 생활보호수급자증	·복지사무소 고베시는 각 구 보건복지부
2	생활보호가 정지 또는 폐지되었다	· 생활보호 폐지(정지) 통지서	
3	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아동부양수당증서(복사)	
4	세대 총소득이 인정기준액 이하임☆	· 2020年度所得証明書(原本) 2019년도 소득증명서(원본)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 ·세대전원의 소득을 알 수 있는 것 <u>원천징수표 불가</u>	· 시민세과 · 수세과 · 세무과 등
5	1~4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	· 사정 내용에 따라 현 교육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 등	

(증명서 발급처는 시읍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표시의 통지서등에 대해서는 조치가 결정되었을 때에 해당자에게 송부(교부)되어 있습니다.

- ②가구 총소득이 인정기준 이하에서 신청하실 경우 원천징수표는 모든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가합니다.
- ③특별아동부양수당, 아동수당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④배우자의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는 배우자의 신분 요건의 최대 소득 38만엔을 가산하여 심사합니다.